

고 성 군

공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 관 의 장
람	

제437호 2020. 7. 28. (화)

입 법 예 고

고성군 공고 제2020-1209호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
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

회									
람									

고성군 공고 제2020-1209호

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「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고성군 조례·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7. 28.

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 및 우리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에 따라 표준어법 및 현실적 여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적절하지 않은 어법 및 용어 변경

- 1) 시설로써 군수 → 시설로서 고성군수(안 제2조)
- 2)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→ 안전관리요원(안 제4조)
- 3) 공익근무요원 → 사회복지요원(안 제8조)

나. 우리군 현실적 여건에 맞지 않는 조항 삭제

- 안 5조 제4항,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

다. 재난안전관리체계에 따라 기관명 수정

- “소방방재청장” → “행정안전부장관”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는 2020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(참조:안전관리과장)에게 제출
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- 2) 성명(법인 및 기타 기관·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),
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처

- 1) 주소: (52943)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, 고성군청 안전관리과
- 2) 전화: (055) 670-2524. 팩스: (055) 670-2509

다. 제출 방법 및 문의처

- 1)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안전관리과 사회재난담당 [전화: (055) 670-2524]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개정문 및 친구조문 대비표 1부.

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시설로써 군수”를 “시설로서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제3호 중 “물놀이 안전관리요원”을 “안전관리요원”으로 한다.

제5조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8조제2항제1호 중 “공익근무요원”을 “사회복무요원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소방방재청장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개	정	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물놀이 관리지역(이하 “관리지역”이라 한다)”이란 해수욕장, 하천, 계곡, 갯벌,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<u>시설로써 군수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.</u></p> <p>2. ~ 6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시설로서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-----.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		
<p>제4조(사전대비계획 수립)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4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·운영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</u></p> <p>4. ~ 6. (생략)</p>	<p>제4조(사전대비계획 수립)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안전관리요원</u> -----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		
<p>제5조(안전시설 정비·확충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군수는 100미터 간격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 (생략)</p> <p>⑥ <u>해수욕장의 안전시설물 설치·관리</u>는 「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</p>	<p>제5조(안전시설 정비·확충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		

현행	개정안
<p><u>기준</u>을 준용한다.</p> <p>제8조(안전관리요원) ① (생략)</p> <p>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공무원(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.)</p> <p>2. ~ 6. (생략)</p> <p>제22조(상황보고)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경상남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8조(안전관리요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.</p> <p>1. -----사회복무요원-----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2조(상황보고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행정안전부장관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자치법규명: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안
 - 성명(단체명):
 - 주 소:
 - 전화번호:
 - 의견 내용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정안	찬반의견		수정안	수정사유
	찬성	반대		

